

(제159회-본 회의 제2차부록)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999
----------	-----

발의년월일 : 2013. 7. 1.  
발 의 자 : 김순점 의원 외 5명

## 1. 개정사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6조에 따라 장애비하 표현을 삭제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의회의원”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개정(안 제2조)
- 나. “의장”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사무국장” ⇒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으로 한다)”으로 개정  
(안 제3조)
- 다. “법”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개정(안 제15조)
- 라.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삭제 (안 제88조)
- 마. “징계대상의원이라고” ⇒ “징계대상자라고”로 개정(안 제92조)

## 3. 근거법규

-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모니터 2012-011(2012. 11. 8)호

##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을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을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 중 “사무국장”을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법”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2항 중 “징계대상의원이라고”를 “징계대상자라고”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등록) 의회의원</b>(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p> <p><b>제3조 (의석배정)</b> ①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석은 <u>의장이</u>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p> <p>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u>사무국장이</u>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p> <p><b>제15조 (회의에 관한 선포)</b> ① (생략)</p> <p>② 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 제63조제1 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 할 수 있다.</p> <p><b>제88조 (방청의 제한)</b> ① (생략)</p> <p>1.~2. (생략)</p> <p><u>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u></p> <p>4. (생략)</p> <p>②~③ (생략)</p> <p><b>제92조 (징계요구 협의)</b> ① (생략)</p> <p>② 제1항 협의결과 <u>징계대상의원이라고</u> 판단될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p>	<p><b>제2조(등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b> ————— —————. —————.</p> <p><b>제3조 (의석배정)</b> ① ————— ————— <u>울산</u> <u>광역시중구의회</u> <u>의장</u>(이하 “<u>의장</u>”이라 한다) ————— —————.</p> <p>② ————— <u>의회사무국장</u>(이하 “<u>사무국장</u>”이라 한다) —————.</p> <p><b>제15조 (회의에 관한 선포)</b>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지방자치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 —————.</p> <p><b>제88조 (방청의 제한)</b> 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4.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b>제92조 (징계요구 협의)</b>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징계대상자라고</u> ————— —————. —————.</p>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짐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5.11, 2012.10.22&gt;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8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1.10.31>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음주 상태에 있는 자<개정 2011.10.31>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1.10.31>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7월 1일 김순점의원 외 5명  
나. 회부일자 : 2013년 7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안번호 제999호)  
(2013년 7월 8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김순점 의원)

#### 가. 개정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6조에 따라 장애 비하 표현을 삭제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의회의원”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개정(안 제2조)
- 2) “의장”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사무국장” ⇒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으로 한다)”으로 개정(안 제3조)
- 3) “법”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개정(안 제15조)
- 4)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삭제 (안 제88조)
- 5) “징계대상의원이라고” ⇒ “징계대상자라고”로 개정(안 제92조)

#### 다. 관련법규

-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 · 이용의 차별 금지)
-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3)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모니터 2012-011(2012. 11. 8)호

### 3. 전문위원 겸토보고의 요지(겸토보고자 : 박용순 전문위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규칙안 제88조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비하 표현인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
-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본 규칙안은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